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207
----------	-----

제출년월일 : 2006. 2. 3.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정이유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 시장상인회의 등록과 운영 및 관리,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및 시장정비사업에 관한사항을 정하여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정시장의 시설기준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내지 제8조)
- 시장상인회의 등록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내지 제13조)
-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내지 제19조)
- 시장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 지역경제과

라. 입법예고

1) 예고기간 : 2005.12.22 ~ 2006. 1.17.

2) 예고방법 : 공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시공고

3) 제출의견 : 없음

마. 심사대상 규제사무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 재래시장의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 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2. “인정시장”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장이 아닌 것 중 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시장을 말한다.
3. “시장상인회”라 함은 법제40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설립을 등록한 상인회를 말한다.
4. “시장정비사업”이라 함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에 속하는 토지나 건축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시장정비사업조합 등이 사업시행구역안에 있는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장을 재개발·재건축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재래시장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4조(지역시장 육성계획)** ①구청장은 매년 관내 시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시장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지역시장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향후 5년 이상의 장기계획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③구청장은 관내 시장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등록 시장이나 시장 상인회에 요구할 수 있다.
- ④구청장은 시장 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시장육성계획에는 연도별 투자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

제5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 ①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점포는 인정시장 내 적법한 건축물에 입점하여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로 한다.
- ②영 제3조제1항의 ‘점유하는 토지면적’은 그 점포가 속한 건축물이 있는 번지의 전체 토지면적으로 한다

- 제6조(인정시장의 운영 및 관리)** ①인정시장에는 상인회를 두어야 하며, 상인회는 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구청장은 인정시장 및 상인회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7조(인정시장의 등록취소)** ①구청장은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시장의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정시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②구청장이 제1항과 관련하여 인정시장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시장의 안전관리 등)** ①국비 또는 시·구비의 지원을 받은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 및 서울특별시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②상인회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상인을 회원으로 설립된 상점가진홍조합과 민법에 의한 법인, 시장상인을 회원으로 설립된 상인대표단체 및 상법상의 회사인 시장(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시장관리자는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보수·정비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시장 상인회의 등록과 운영

- 제9조 (상인회 설립과 등록) ①상인회는 법 제40조 및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립을 등록하여야 한다.
- ②상인회의 회원은 당해 시장내의 1점포 1인으로 한다.
- ③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0조 (상인회 기능) 상인회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또는 보조하는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사업의 수행
2. 법 제11조 내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경영현대화 촉진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또는 보조하는 상거래 현대화 및 공동 사업 등 경영현대화 사업의 수행
3. 규칙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 포함된 사업내용

- 제11조(등록 취소)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1의 경우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정시장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규칙 제10조제2항의 보고 등을 태만히 한 경우
3. 상인회의 존속이 시장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인회가 스스로 조직을 해산한 경우

- ②구청장이 제1항과 관련하여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시장 활성화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및 집행·정산·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동일한 시장 내에 수개의 상인회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시장활성화사업을 추진하거나, 보조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인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상법상 회사의 시장)가 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자(법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⑤ 시장관리자가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임대료 인상억제 등 임차상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서류의 비치) 시장관리자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필요한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 등은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시설물의 관리 및 시장정비사업

제14조(시설물의 소유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공공시설물(토지, 주차장 등)은 영등포구 소유로 한다. 다만 등록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 상인회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장 내 시설물(비가리개 시설 등)은 등록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상인회 소유로 할 수 있다.

- 제15조(시설물의 관리)** ① 시설물의 관리권은 시장관리자에 있으며, 시장관리자는 동 시설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의의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을 철거 및 보수·정비를 명하거나 직접 조치할 수 있으며, 시장관리자는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관리자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서류(도면포함)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관리자는 시설물의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

고 구청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시장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물의 설치 등) ①시장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시장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5년 이상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파손 등의 손해를 입힌 경우 시장관리자가 복구하여야 한다.

③시장관리자는 정부 또는 시구의 예산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④구청장은 시장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부서 및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일괄처리 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시설물의 위탁운영) 공영주차장(시장현대화 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등을 포함 한다) 등 공유재산 중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구청장이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입점 상인 및 시장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사용료 또는 비용의 징수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 처분이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시설물 위탁의 취소)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20조(시장의 정비사업 등) ①영 제9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구청장이 사업시행구역을 추천할 경우에는 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 가능 여

부 등을 검토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 ② 보조금을 지원받아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다만, 사정변경에 의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시장정비사업을 완료한 시장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경영현대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시장 육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기 등록된 인정시장, 상인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